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과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73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39호)
- 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82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6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개요	1
--------------	---

【임호선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병진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모경종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조인철의원안】

1. 제안 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Ⅱ. 검토의견 7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조정(임호선·조인철의원안) 7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과 등
(임호선·이병진·모경종·조인철의원안) 9

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임호선의원안) 18

I. 개요

【임호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08. 08.

다. 회부연월일 : 2024. 08. 0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하며,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등).

【이병진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9.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모경종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모경종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09.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09.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도로의 보도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정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주·정차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조인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9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09.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0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

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됨.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함(안 제2조제 19호의2).
- 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제55조의2제1항 등).
- 다.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2항).

II. 검토의견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조정(임호선·조인철의원안)

임호선·조인철의원안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임호선의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u>25킬로미터</u>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19의2. ----- ----- ----- ----- <u>20킬로미터</u> ----- ----- ----- ----- ----- -----	19의2. ----- ----- ----- ----- <u>20킬로미터</u> ----- ----- ----- ----- ----- -----

말한다. 20. ~ 33. (생략)	---. 20. ~ 33. (현행과 같음)	---. 20. ~ 33.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들은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최고속도를 하향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최고속도 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정도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권 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합헌이라고 판시한바 있음¹⁾.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는 자전거도로 등 현재 조성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제반 환경과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격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

1)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전원재판부 결정

2)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과 등 (임호선·이병진·모경중·조인철의원안)

개정안들은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임호선·이병진·모경중·조인철의원안),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모경중의원안), 대여사업자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는(조인철의원안) 내용임.

현 행	임호선의원안	이병진의원안	모경중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신 설>	제 56 조 의 2 (개 인 형 이 동 장 치 대 여 사 업 자 의 준수 사항) 다 른 사람의 수요에 응 하여 개인 형 이동장 치를 이용 자로부터 사 용 료 를 받고 대여	제 55 조 의 2 (개 인 형 이 동 장 치 대 여 사 업 자 의 준수 사항) 이 용 자 로 부 터 사 용 료 를 받고 개인형 이 동 장 치 를 대 여 하 는 자 (이 하 “ 개 인 형	제 55 조 의 2 (개 인 형 이 동 장 치 대 여 사 업 자 의 준수 사항) 이 용 자 로 부 터 사 용 료 를 받고 개인형 이 동 장 치 를 대 여 하 는 자 (이 하 “ 개 인 형	제 55 조 의 2 (개 인 형 이 동 장 치 대 여 사 업 자 의 준수 사항) ① 이 용 자 로 부 터 사 용 료 를 받고 개인형 이 동 장 치 를 대 여 하 는 자 (이 하 “대여사업

2201010호),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1222호)

하는 자
(이하 “개
인형 이동
장치 대여
사업자”라
한 다) 는
대 여 사 업
용 개인형
이 동 장 치
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 동 장 치
의 이용자
에 대하여
운 전 자 격
을 확인하
고, 해당
이 용 자 가
제80조제1
항에 따라
시 · 도 경
찰 청 장 으
로부터 운
전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거나 운

이 동 장 치
대 여 사 업
자”라 한
다)는 대
여 사 업 용
개인형 이
동 장 치 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
동 장 치 의
이 용 자 에
대하여 운
전 자 격 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
자가 제80
조제1항에
따라 시 ·
도 경 찰 청
장 으 로 부
터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 하 거
나 운전면
허의 효력
이 정지된

이 동 장 치
대 여 사 업
자”라 한
다)는 대
여 사 업 용
개인형 이
동 장 치 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
동 장 치 의
이 용 자 에
대하여 운
전 자 격 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
자가 제80
조제1항에
따라 시 ·
도 경 찰 청
장 으 로 부
터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 하 거
나 운전면
허의 효력
이 정지된

자”라 한
다)는 대
여 사 업 용
개인형 이
동 장 치 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
동 장 치 의
이 용 자 에
대하여 운
전 자 격 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
자가 제80
조제1항에
따라 시 ·
도 경 찰 청
장 으 로 부
터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 하 거
나 운전면
허의 효력
이 정지된
경 우 에 는
개인형 이

	<u>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아니 된다.</u>	<u>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아니 된다.</u>	<u>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아니 된다.</u>	<u>동장치를 대여하는 아니 된다.</u> <u>②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u>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 ----- ----- -----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 ----- ----- -----

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 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

[illegible]

함 하 며 , 이하 “고 용주등”이 라 한다) 는 운전자 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 키도록 항 상 주의시 키고 감독 하여야 한 다.			<u>제55조의2</u> 에 따른 개인형 이 동장치 대 여 사업 자 로서 개인 형 이동장 치를 대여 한 사람-	<u>제56조의2</u> 에 따른 개인형 이 동장치 대 여 사업 자 로서 개인 형 이동장 치를 대여 한 사람-
			----- ----- ----- ----- ----- ----- -.	----- ----- ----- ----- ----- ----- -----.
② (생 략)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 <u>제 56 조 의 2</u> (자율주행 자동차 운	② (현행 과 같음)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 <u>제56조의3</u> 자 율 주 행 자 동차 운전	② (현행 과 같음) <u>제 56 조 의 2</u> (자율주행 자동차 운	② (현행 과 같음) <u>제 56 조 의 2</u> (자율주행 자동차 운	② (현행 과 같음) <u>제 56 조 의 2</u> (자율주행 자동차 운

전자의 준수 사항 등) (생략)	자의 준수 사항 등) (현행 제56조의2와 같음)	전자의 준수 사항 등) (현행과 같음)	전자의 준수 사항 등) (현행과 같음)	전자의 준수 사항 등) (현행과 같음)
<u>제 56 조 의 3</u>	<u>제 56 조 의 4</u>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생략)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현행 제56조의3과 같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
제160조(과태료) ①	제160조(과태료) ①	제160조(과태료) ①	제160조(과태료) ①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	-----	-----	-----
호의 어느	-----	-----	-----	-----
하나에 해	-----	-----	-----	-----
당하는 사	-----	-----	-----	-----
람에게 는	-----	-----	-----	-----

500 만 원	-----	-----	-----	-----
이하의 과	-----	-----	-----	-----
태료를 부	-----	-----	-----	-----
과한다.	-----	-----	-----.	-----.
	-----.	-----.		
1. ~ 8.	1. ~ 8.	1. ~ 9.	1. ~ 9.	1. ~ 9.
(생	(현행과	(현행과	(현행과	(현행과
략)	같음)	같음)	같음)	같음)
<신 설>	9. 제56조	10. 제55	10. 제55	10. 제55
	<u>의 2 를</u>	<u>조의2를</u>	<u>조의2를</u>	<u>조의2제</u>
	<u>위 반 하</u>	<u>위 반 하</u>	<u>위 반 하</u>	<u>1 항 을</u>
	<u>여 이용</u>	<u>여 이용</u>	<u>여 이용</u>	<u>위 반 하</u>
	<u>자의 운</u>	<u>자의 운</u>	<u>자의 운</u>	<u>여 이용</u>
	<u>전 자 격</u>	<u>전 자 격</u>	<u>전 자 격</u>	<u>자의 운</u>
	<u>을 확인</u>	<u>을 확인</u>	<u>을 확인</u>	<u>전 자 격</u>
	<u>하지 아</u>	<u>하지 아</u>	<u>하지 아</u>	<u>을 확인</u>
	<u>니 하 고</u>	<u>니 하 고</u>	<u>니 하 고</u>	<u>하지 아</u>
	<u>대 여 사</u>	<u>대 여 사</u>	<u>대 여 사</u>	<u>니 하 고</u>
	<u>업용 개</u>	<u>업용 개</u>	<u>업용 개</u>	<u>대 여 사</u>
	<u>인형 이</u>	<u>인형 이</u>	<u>인형 이</u>	<u>업용 개</u>
	<u>동 장 치</u>	<u>동 장 치</u>	<u>동 장 치</u>	<u>인형 이</u>
	<u>를 대여</u>	<u>를 대여</u>	<u>를 대여</u>	<u>동 장 치</u>
	<u>한 대여</u>	<u>한 대여</u>	<u>한 대여</u>	<u>를 대여</u>
	<u>사업자</u>	<u>사업자</u>	<u>사업자</u>	<u>한 대여</u>
				<u>사업자</u>
② ~ ④	② ~ ④	② ~ ④	② ~ ④	② ~ ④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먼저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여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운전 시 필요한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도로교통법」은 개별 운전자나 보행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여사업자의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4년 6월 27일 홍기원 의원, 2024년 7월 1일 박성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최근 도로환경을 어지럽히고 여러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과태료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여사업자가 공공장소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질서 확립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형이동장치 공유 서비스의 특성상 대여사업자가 주정차를 시시각각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단 주정차의 책임을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통제 수단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56조³⁾의 ‘고용주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3)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은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임호선의원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등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⁴⁾.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음주 교통사고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음주운전 단속(건)		2,588	8,238	7,037
음주 교통사고	사고(건)	-	259	253
	사망(명)	-	2	2
	부상(명)	-	285	265

※ 자료: 경찰청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 / 2021년 음주운전 단속은 5. 13~12.31.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2년부터 통계 집계

이에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에 대해 자동차등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4)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생략)

현행	임호선의원안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u>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u> <u>이하</u>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u>자전거등을</u>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 ----- ----- -----<u>이하</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자전거를</u>----- ----- 12. -----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u>자전거등</u> <u>을</u>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하 다)	----- ----- ----- ----- <u>자전거를</u>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경찰청은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구조·성능·통행방법이 크게 다른 자동차등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